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

□ 목 적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 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기계설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함

- 설계·시공·감리업무수행자 및 허가권자(시·군·구청장 등)에게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관련 서식 작성 방법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 적합·부적합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내용 해석을 위한 정보 제공

□ 관련 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 「기계설비법」 제14조,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제2021-851호](2021.6.7)

□ 적용 시기 및 대상

- (1)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2)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3)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 (4)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호~제12호 제9조(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제2항
 - 제외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中 제13호(플랜트설비)~제14호(특수설비)
- (5) 사용 전 검사는 2020년 4월 18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기계설비 기술기준」 (법 제14조)

「기계설비법」

-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1조, 별표 5)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영 제11조 관련 별표 1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참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환온·환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

(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 (2)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3)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 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4)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건축 사용승인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함.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음

(5)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며, 기계설비 착공 전 신청서 작성 이전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와 계약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착공 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인자 : 기계설비설계자, 시공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사용 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인자 : 기계설비시공자, 감리업무수행자 ※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 제출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기계설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격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 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 mm 이하이며, 길이가 600 mm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 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m ²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 kg/h(도시가스는 232.6 kW)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 MW를 초과하는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 기계설비법 관련 내용 발췌

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근거 법조문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개조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법 제39조제2항제2호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 서식]

제 호	
[] 완성 검사증명서 [] 정기 검사증명서	
1. 상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사업소 소재지:	
6. 검사원 성명:	7. 검사 연월일:
8. 차기 검사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제30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판매·수입)시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인	
발급지(사명(주소): 발급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복합지 120g/㎡)

제 호	
시공감리증명서	
1. 상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사업소 소재지:	
6. 감리구역:	
7. 감리원 성명:	
8. 시공감리기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인	
발급지(사명(주소): 발급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복합지 120g/㎡)

□ 업무처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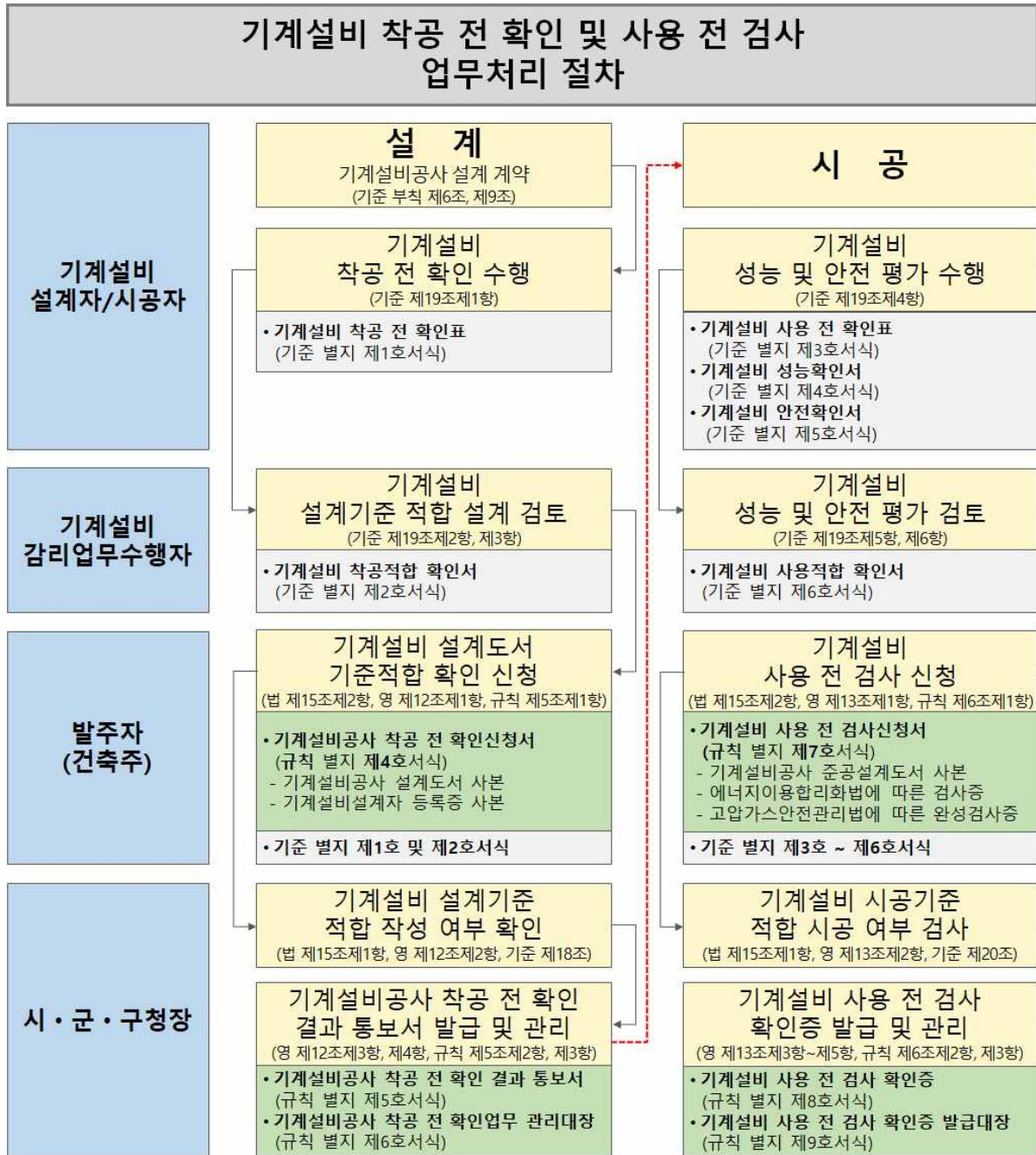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해당 부서

- 이 매뉴얼 부록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 개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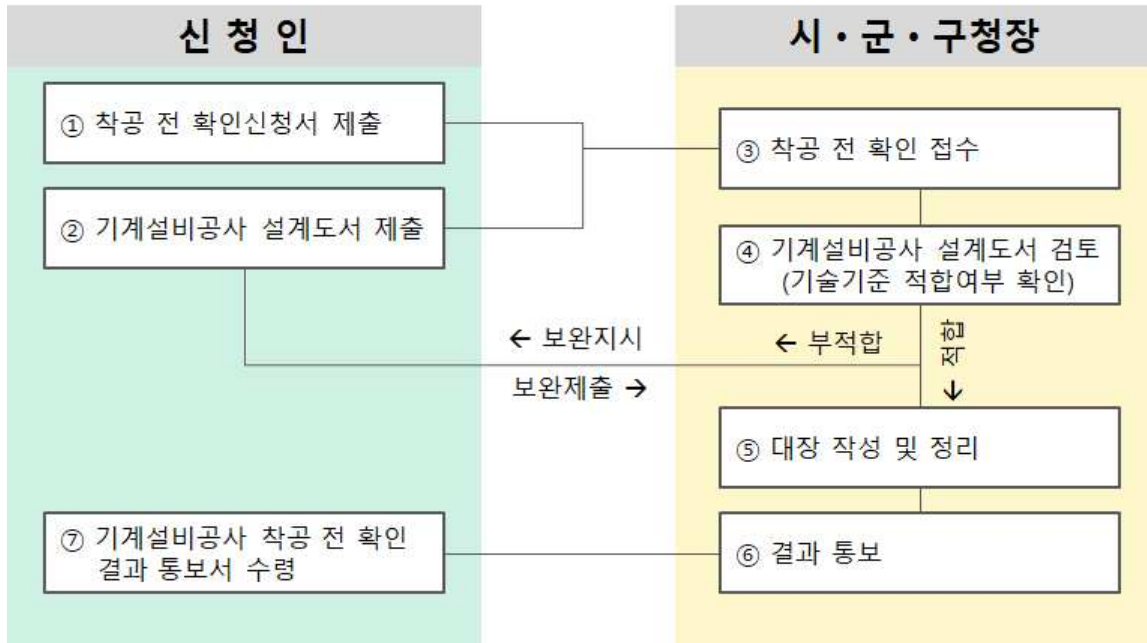
구 분	기계설비 설계자/시공자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	발주자(건축주)	시·군·구청
대 상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 제외)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 목욕장, 놀이형시설, 실배수영장 등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기술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판매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기계설비 범위	열원 및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 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기술기준 별표1~12)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수행 ·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설계기준 적합 설계 검토 ·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 평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설계도서 기준적합 확인신청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 및 관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및 관리
착공 전 작성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별지1호) ※ (시공자) 시공계획서 작성, 필요시 시공상세도면 작성, 공정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별지2호)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면·공정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규칙 별지4호)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규칙 별지5호)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규칙 별지6호)
사용 전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별지3호)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별지4호)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별지5호) ※ (시공자)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별지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규칙 별지7호) -기계설비공사 준공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규칙 별지8호) · 기계설비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별지9호)
근거조항	· 기술기준 제19조 제1항, 제4항	· 기술기준 제19조 제2~3항, 제5~6항	· 법 제15조제2항 · 영 제12~13조 · 규칙 제5~6조	· 법 제15조제1항 · 영 제12~13조 · 규칙 제5~6조

□ 업무처리 절차



I 기계설비공사 업무의 절차와 방법

착공 전 확인 업무처리 절차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



□ 벌칙기준

- (1)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기계설비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